

광주지방법원 2015. 5. 22 선고 2014나1110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5. 5. 22 선고 2014나11105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4. 9. 18 선고 2014가단195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종결 2015. 5. 1.

판결 선고 2015. 5. 22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4가단1954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전남 영광군 D 임야 17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ㄴ, ㄷ,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 세멘트블럭조 담장을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㎡를 인도하고, 피고 C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, ㄹ, ㄹ', 가, 나, 다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3㎡를 철거하고, 그 대지를 인도하며, 피고들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, ㅅ, ㅅ', 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 세멘트블럭조 담장 9.62㎡를 철거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제4, 5호증, 제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갑 제8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가. 원고는 2012. 9. 4. 전남 영광군 D 임야 172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, ㄷ,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 세멘트블럭조 담장(이하 '이 사건 제1담장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고, 그 부지에 해당하는 같은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㎡(이하 '이 사건 제1담장부지'라 한다)를 점유하고 있다.

다.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ㄷ, ㄹ, ㄹ', 가, 나, 다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3㎡(이하 '이 사건 지붕'이라 한다)를 소유하면서, 그 대지(이하 '이 사건 지붕부지'라 한다)를 점유하고 있다.

라. 피고들은 같은 도면 표시 바, □, □', 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에 9.62m의 세멘트블럭조 담장(이하 '이 사건 제2담장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제1담장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제1담장부지를 인도하고, 피고 C은 이 사건 지붕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지붕부지를 인도하고,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법정지상권 피고들은, I가 1988. 3. 17.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제2담장을 설치하였는데, 원고가 1995. 7. 18.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 및 이 사건 제2담장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, 이 사건 지붕은 위 건물의 일부이므로, 이 사건 지붕 및 이 사건 제2담장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8 내지 10호증(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제2담장은 1983. 3. 17. I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2011. 3. 이후에 새로 설치한 담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을 제1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2010. 6. 25.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8.31㎡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, 이 사건 지붕은 위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I가 이 사건 지붕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I가 이 사건 지붕 및 이 사건 제2담장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) 점유 이전 피고들은, 피고 B의 처 L이 이 사건 제1, 2담장을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, 2담장의 점유가 L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L이 2014. 8. 12. 전남 영광군 J

토지 위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이 사건 제1, 2담장이 위 주택의 부속물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, L이 피고 B의 처인 점, 피고 B와 L이 위 주택에서 펜션영업을 해온 점, 펜션 영업에 사용된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8.31m²의 소유자가 피고 B의 모인 피고 C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, 2담장의 점유가 L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(오히려 피고들과 L이 이 사건 제1, 2담장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권리남용 피고들은, 이 사건 지붕 및 이 사건 제1, 2담장의 철거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,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면적 및 성질, 위 철거로 인한 피고들의 피해 및 원고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면,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황정수

판사안현정

판사장명

별지